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 금 운 용 계 획 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1363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201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접수된 이후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II.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6년도 건립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한 안정적 재원 조성을 위해 지출계획 없이 기금 적립 추진

나. 2016년도 자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 2016년도 조성계획 | | | 2016년도 말 조성액 |
|-----------------|----|-----------|--------------|
| 수입 | 지출 | 증감 | |
| (출연금) 8,208,775 | - | 8,242,600 | 8,242,600 |
| (이자수입) 33,825 | | | |
| (합계) 8,242,600 | | | |

〈표 2-1〉 기금수지 총괄

(단위 : 천원)

| 수입 계획 | | 지출 계획 | |
|-----------------|-----------|----------|-----------|
| 항목 | '16년 수입액 | 항목 | '16년 지출액 |
| 합계 | 8,242,600 | 합계 | 8,242,600 |
| 출연금 | 8,208,775 | 고유목적사업비 | 0 |
| 보조금 | 0 | 융자금 | 0 |
| 차입금 | 0 | 인력운영비 | 0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0 | 기본경비 | 0 |
| 예탁금상환금 | 0 | 예탁금 | 0 |
| 예치금회수 | 0 | 예치금 | 8,242,600 |
| 예수금 | 0 | 차입원리금상환 | 0 |
| 이자수입 | 33,825 | 예수금원리금상환 | 0 |
| 기타수입 | 0 | 기타지출 | 0 |

※ 전년도 수입 및 지출 없음

〈표 2-2〉 기금 수입계획

(단위 : 천원)

| 장 | 관 | 항 | 목 | '16년 수입액 | 전년도 수입액 | 증감 | 산출내역 |
|-----------------|---|---|---|-------------|------------|-----------|-------------------------------|
| 수입합계 | | | | 8,242,600 | - | 8,242,600 | |
| 200 세외수입 | | | | 33,825 | - | 33,825 | |
| 210 경상적세외수입 | | | | 33,825 | - | 33,825 | |
| 216 이자수입 | | | | 33,825 | - | 33,825 | |
|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 | | | 33,825 | - | 33,825 | 시교육청 금고 예치금 이자 33,825,000원 |
| 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 | | 8,208,775 | - | 8,208,775 | |
| 720 내부거래 | | | | 8,208,775 | - | 8,208,775 | |
| 721 전입금 | | | | 8,208,775 | - | 8,208,775 | |
|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 | | | 8,208,775 | - | 8,208,775 | |

〈표 2-2〉 기금 지출계획

(단위 : 천원)

| 분야 | 부문 | 정책 | 단위 | 세부 | 편성목 | '16년 지출액 | 전년도 지출액 | 증감 |
|-----------|----|----|----|----|-----|-------------|------------|-----------|
| 지출합계 | | | | | | 8,242,600 | - | 8,242,600 |
| 일반 공공행정 | | | | | | 8,242,600 | - | 8,242,600 |
| 일반행정 | | | | | | 8,242,600 | - | 8,242,600 |
| 재무활동 | | | | | | 8,242,600 | - | 8,242,600 |
| 보전지출 | | | | | | 8,242,600 | - | 8,242,600 |
| 시교육청 금고예치 | | | | | | 8,242,600 | - | 8,242,600 |
| 602-01예치금 | | | | | | 8,242,600 | - | 8,242,600 |
| 예치금 | | | | | | 8,242,600 | - | 8,242,600 |

Ⅲ. 검토의견

- 동 기금운용계획은 지난 제268회 정례회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교육청 신청사¹⁾ 및 연수원²⁾ 건립을 위한 적립성 기금을 운용하고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임

- 동 기금운영계획의 경우, 수입계획은 99.6%를 출연금(82억 800만원)으로 편성하고,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난 제268회 정례회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의결되어 적립성 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이를 운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개요

-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68번지(구 수도여고 부지)
- 부지면적: 13,180.7㎡
- 건축규모: 45,665㎡ 내외(지하 2층, 지상 12층)
- 총사업비: 1,247억원
- 사업기간: 2016년 ~ 2020년

2) 연수원 건립 개요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35번지(구 신창중 부지)
- 부지면적: 16,335㎡
- 건축규모: 4,800㎡ 내외
- 총사업비: 97억원

1. 세출과목을 수입항목에 혼용

-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수입을 “출연금”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실제 수입계획에는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내부거래의 경우 세입 즉, 받는 회계의 대응과목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금수입계획의 편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관련 조례³⁾중 기금의 재원을 “출연금”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기금조성계획이나 기금수지총괄의 경우에도 세출과목인 “출연금”을 세입과목에 까지 혼용하여 기재하고 있음
 - 이는 동 기금의 주요재원이 “출연금”이라는 것 일뿐 세출과목인 출연금과 세입과목인 “기타회계 전입금”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인 바 향후 “출연금”과 “기타회계 전입금”이 혼용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적립성 기금에 대한 재원관리 필요

- 지출항목의 경우, 금년도 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82억 4,200만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임

3)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대금

2.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다만, 일반적으로 예치금은 수입과 지출의 차액에 대해 단기간 일시 보관하거나 운용하는 재원인 바
- 동 기금이 청사신축을 위한 적립성 기금인 만큼 전액 예치금으로 운용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예탁 가능한 재원에 대해서는 예탁금으로 편성하고, 실제 금년도에 지출될 재원에 한정하여 일부를 예치하여 운용하는 방안 혹은 예탁후 필요시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일부 예치하는 방안 등 보다 다양한 적립금 확충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관련 조례에 대한 정비 필요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는 기금의 재원을 출연금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출자·출연기관 등 특정 대상에 한정하여 편성하고 있음⁴⁾
- 또한 동 기금의 경우, 실제 기금수입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출연금으로 기재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⁵⁾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 대상여부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행정자치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120

5)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실제 동 기금운용계획안중 **자금운용계획**과 **기금수지총괄**에는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금 편성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이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과목에 출연금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나
 - 동 기금으로 전출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출항목에는 출연금 대신 “**기금적립**”으로 기재하고 있어 사실상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의회의 사전동의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기금재원을 보다 명확히 운용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이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기금적립이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기금재원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